

의안번호	제 4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6월 일 (제348회)

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5월 일

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5월 일
발 의 자 : 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박우양·
이의영·황규철·윤은희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,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는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용기준 마련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빌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경관법」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충청북도 경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

제6조제5항 중 “제3항제3호부터 제8호”를 “제3항제3호부터 제9호”로 한다.

제4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장 산업시설용지 개발 등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(하한만 적용),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구성) ① ~ ② (생 략)	제6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(신 설)</p>	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경관법」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충청북도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</p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p>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제3항제3호</u>부터 <u>제8호</u>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⑤ -----</p> <p>----- <u>제3항제3호</u></p> <p>부터 <u>제9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장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및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</u> <u>(신 설)</u>	<u>제4장 산업시설용지 개발 등</u> <u>제18조(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) 「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17제2 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 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 한 기준은 준공연도 및 주변 여 건을 고려하여 「산업입지의 개 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4조에 서 정하는 녹지율(하한만 적용),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.</u>
<u>제18조(시행규칙)</u>	<u>제19조(시행규칙)</u>

관 계 법령

□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
제6조(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)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·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
1.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 2.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지정권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,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1.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 2.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경관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·도에 설치된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, 설계전문가,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

시 ·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라 해당 시 ·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5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해당 시 ·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 · 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7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8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9. 「경관법」에 따라 해당 시 ·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,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
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

제4조(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: 1명
 2.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: 5명
 3.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: 각 호별 3명
 4.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: 각 호별 2명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제39조의17(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)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·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,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-650호)

제14조(공공녹지·도로·철도 및 환경기초시설)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)제2조제1호

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, 유원지는 제외한다)도로·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 한다.

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

구분	산업단지 규모	계획 기준	비고
녹지율	300만m ² 이상	10% 이상 ~ 13% 미만	
	100만m ² 이상~ 300만m ² 미만	7.5% 이상 ~ 10% 미만	
	100만m ² 미만	5% 이상 ~ 7.5% 미만	

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 비율

구분	산업단지 규모	계획 기준	비고
도로율	100만m ² 이상	10% 이상	
	100만m ² 미만	8% 이상	